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코자 함.

2. 주요골자

- 임신한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안 제23조 제2항)

3. 검토의견

안 제23조제2항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에 6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90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기준¹⁾에 근접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보호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출산휴가 확대조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문도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모성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준은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음).

1) 국제노동기구에서는 2000년 6월 15일 제88회 총회에서 모성보호협약을 개정하여 여성의 출산휴가를 12주에서 14주로 확대한 바 있음.